

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안연월일 : 2009. 1. .

제안자 : 국회운영위원장

주 문

- 가. 공직선거법등의 심사·처리를 위하여 국회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 내에 「정치개혁특별위원회」를 구성한다.
- 나. 위원 수는 22인으로 한다.
- 다.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은 2009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안이유

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기 위한 공직선거법등의 개정을 위해서 「정치개혁특별위원회」를 구성하려는 것임.